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Q&A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

법제처는 2008년부터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http://easylaw.go.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분류하고, 법률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에서는 2024년 12월 현재 서술형 279건, 사례형 18건 등 총 297건의 생활법령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 코너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는 주제와 관련하여 알아두면 좋은 법령정보를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웹페이지: <http://easylaw.go.kr>. 모바일앱: Smart 생활법률)』에 접속하셔서 ‘백문백답’ 등을 통하여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

01

Q | 이혼 후 전 배우자와 자녀 양육비를 두고 협의 중인데, 서로 의견 차이가 커서 합의에 이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A | 부모 간 양육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에 관하여 정할 수도 있습니다.

● 양육비의 개념 및 지급의무

- “양육비”란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민법」 제4조).
- 비양육부·모는 양육부·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본문).
- 다만, 비양육부·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비양육부·모의 부모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단서).
- ※ “비양육부·모”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를 말하고, “양육부·모”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를 말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
- ※ “양육비 채권자”란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이거나 법정대리인 등 실질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부모의 협의에 따른 양육비의 결정

- 부모의 이혼, 혼인의 취소의 경우 또는 인지를 하는 경우 당사자는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해 협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1항·제2항, 제824조의2, 제843조 및 제864조의2).

※ “인지(認知)”란 혼인외에서 출생한 자(子)를 그 생부(生父)나 생모(生母)가 자기의 자로 인정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인지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법률상의 부자관계 또는 모자관계가 발생하며, 인지는 그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55조제1항 전단, 제860조 본문 참조).

- 양육비에 관한 부모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

● 협의가 어려운 경우 양육비의 청구

- 양육비에 관한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야 합니다(「민법」 제837조제4항).

- 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1항).

- 위의 재산 명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의3).

- 가정법원은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제1항·제2항 및 「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

- 위의 재산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거부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의4).

02

Q | 양육비를 지급하기 전에 아이를 만나보고 싶는데 상대방의 반대로 아이를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A | 비양육부·모는 미성년 자녀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면접 교섭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의 지원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비양육부·모 및 양육부·모의 신청이 있는 경우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본문).

- 다만, 가정법원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배제되었거나, 면접교섭으로 인해 양육부·모 및 자녀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원을 배제·제한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단서 및 「민법」 제837조의2제3항).

● 면접교섭 지원의 신청

- 면접교섭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2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및 별지 제2호의2서식).

- 면접교섭 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 주민등록표 등본

-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서 또는 법원의 판결·결정·조정 등에 관한 서류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면접교섭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

- 면접교섭 지원에 대한 자녀의 의사와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부·모의 의사
- 「민법」 제837조의2제3항에 따라 면접교섭이 제한·배제되었는지의 여부

● 면접교섭 지원의 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다음의 방법으로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4항).

- 면접교섭 장소의 제공
- 면접교섭 프로그램의 운영
- 면접교섭 지원인력의 제공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03

Q | 전 배우자가 처음에는 양육비를 잘 지급했지만 최근 들어 지급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배우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공제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A |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전 배우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서에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 제출해야 합니다.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 가정법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해, 그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

※ “양육비 채무자”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 참조).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은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서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4).
- 양육비 채권자·양육비 채무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와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
- 집행권원의 표시
- 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역과 직접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의 구체적인 내용
- 집행권원에 표시된 양육비 채권의 일부에 관해서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해서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

-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장래에 향해 그 효력을 잃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3항).
-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나 그 취소명령을 양육비 채무자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4항).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나 그 취소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그 재판을 한 가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5항 및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6).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의무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 및 제67조 제1항).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 채무자의 직장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가정 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6항).

04

Q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아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은 완료 했지만, 당장 사용할 양육비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지가 위태롭거나 위태로워질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긴급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해당 금액을 징수합니다.

● 미성년 자녀의 안전 확보를 위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양육비이행 관리원의 장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함)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 긴급지원의 기준 및 대상

- 긴급지원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입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위 긴급지원의 기준을 갖춘 양육비 채권자에 대해 양육비 채권자와 그 가족의 장애 여부, 질환 유무, 생활수준, 그 밖의 긴급 지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급지원의 대상을 결정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본문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
- 다만, 양육비 채권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긴급지원을 하지 않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단서).

● 긴급지원의 금액 및 지급기간

- 긴급지원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며, 9개월을 넘지 않는 지급 기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제4항,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금액」(여성가족부고시 제2022-41호, 2022. 10. 7. 발령·시행)].

● 긴급지원의 신청

- 긴급지원을 신청하려는 양육비 채권자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
 - 양육비 채권자와 그 가족의 장애 여부, 질환 유무, 생활수준, 그 밖의 긴급 지원의 필요성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 양육비 채권자가 긴급지원을 신청한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육비 채권자가 긴급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긴급지원 여부를 결정해 긴급지원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5항).

●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징수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권자에게 긴급지원을 한 경우 그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해 징수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05

Q | 양육비를 그 동안 한 번도 지급하지 않은 전 배우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고 싶습니다.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를 신청하려면 어디에, 그리고 어떤 절차를 통해 요청해야 하나요?

A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는 명단 공개 신청서에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의 대상

-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 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제1항 본문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
 -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 원 이상인 사람
 -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제1항 단서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제3항).
 - 양육비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이행계획을 제출해 위원회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양육비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의 신청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명단 공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5 및 별지 제8호서식).
 - 법원의 이행명령 결정에 관한 서류
 - 법원의 판결, 심판, 양육비 부담조서 등 양육비 채무액과 관련된 서류
 -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의 방법 및 삭제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의 공개는 여성가족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이나 언론(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함)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제3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의 기간은 공개일부터 3년입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제2항).
-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의 공개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명단을 삭제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제3항 및 제4항).
 -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전액을 이행한 경우
 - 양육비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이행계획을 제출해 위원회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양육비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